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23.

발 의 자 : 권은희·이명수·조명희
최연숙·윤미향·박성민
서정숙·태영호·김태년
정찬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,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유해약물·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8호).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8호 중 “음란한 표현”을 “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·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·제조방법·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<u>음란한 표현</u>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</p> <p>9. ·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<u>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·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</u>----- -----</p> <p>9. ·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